

#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주장의 허구와 한계\*

곽진오\*\*

(e-mail: ojkwak@nahf.or.kr)

---

## 目次

---

- I. 서론
  - II. 고유영토론의 허구
  - III. 무주지선점과 허구
  - IV. 국제법적 주장과 한계
  - V. 결론
- 

## I. 서론

일본의 독도(獨島)영유권주장이 기존에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우익정치가들과 집회를 통한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sup>1)</sup> 예를 들면 시마네현(島根県)의 ‘竹島の 날’<sup>2)</sup>과 ‘동경국회의원집회’<sup>3)</sup>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일본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치학박사

- 1) 이 글에서는 독도(獨島), 울릉도(鬱陵島), 죽도(竹島), 송도(松島) 등의 명칭이 혼재되어 등장한다. 이는 독자들이 독도를 쉽게 이해하고 일본이 독도를 송도(松島, 마쓰시마)에서 이른바 죽도(竹島, 다케시마)로 언제부터 왜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모순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임을 밝혀둔다.
- 2) 이 행사는 2005년 2월 22일 시작해 이후 매년 같은 날 시행해 오고 있다. 행사의 정식이름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및 ‘다케시마·북방영토만환요구운동 현민대회’이다. 행사주최는 시마네현,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가 주축이 되며, 2013년 행사부터 정부관계자(차관급)가 참석해 이 행사를 중앙정부행사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
- 3) 지난 6월 5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두 번째인데, 2012년 4월 11일 민주당정권 때 처음 열렸고, 당시에 이 집회와 마찬가지로 內閣府 정무관이 참석했다.

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한일양국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독도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이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한일양국의 공문서에 의해 증명되고 있으며, 일본 스스로도 수차례에 걸쳐 독도가 일본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한 역사적 선례가 있다. 일본은 이러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잔혹한 일제 식민통치의 아픈 기억들을 회상하게 한다. 또한 일본과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자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확립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왜곡하면서까지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해오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 일본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행한 과거사 사죄 발언이 공허한 말장난이나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줄 뿐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논리는 이하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고유영토, 둘째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에 의한 근거이다. 첫째에 해당되는 고유영토주장은 일본이 독도를 조선보다 먼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예가, 일본은 17세기부터 일본어부들이 독도에서 어업을 했고 그래서 독도를 경영했다는 것이다. 둘째, 무주지(無主地)를 일본이 선점해 1905년 2월 22일 일본영토로 시마네현 관보에 고시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영토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sup> 그리고 셋째, 고유영토와 무주지선점을 통해 일본영토가 된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인데 지금은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위의 일본의 주장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 대한 선행 연구는, 김명기·이동원(2010), 김학준(2010), 최장근(2011, 2014), 신용하(2000), 송휘영(2009), 김화경(2009), 김병렬(2007), 등의 기존연구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나 ‘일본의 독도고유영토·무주지선점·국제법적일본영토’주장에 대해 모순을 제기하는 연구는 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분야인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있어서 무엇이 한계인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이 학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기존연구들의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틀에서 벗어나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한계를 제시하려 한다.

4)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즈나가 다케요시. (島根縣告示第40號,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哩二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明治三十八年 二月二十二日, 島根縣知事 松永武吉).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 II. 고유영토론의 허구

일본 문헌에 독도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7세기 일본어부들에 의한 기록이다. 17세기 초 호오키국(伯耆國, 지금의 돗토리현 옛 이름) 요나고(米子, 돗토리현 도시이름) 초닌(町人)인 오오야 진키치(大谷甚吉, 이하 오오야)와 무라카와 이치베이(村川市兵衛, 이하 무라카와)가 막부로부터 죽도(울릉도)에의 도해 면허를 얻어 양가(兩家)는 매년 1회 교대로 동해에 도항해서 전복과 강치를 채취하는 사업을 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문헌에는 1660년의 오오야와 무라카와 두 어부가문의 왕복서한에 “죽도 안의 松島(독도) 「竹島近邊松島, 1659년」 「竹島之內松島, 1660년」”라고 기록되어있다.<sup>5)</sup> 이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일본 배들이 독도를 가기위해 동해에 나간 게 아니라 울릉도를 가기위해 독도(송도)를 지나갔음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일본어부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알고 있었으며 동시에 이들이 독도에서 어업을 한 게 아니고 울릉도에서 어업을 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 일본고문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년)에는 “그러한즉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이주까지로 한다(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sup>6)</sup>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안용복의 1696년 일본방문에 대해서, 오키(隱岐)<sup>7)</sup>의 무라카미家 문서가 밝히고 있듯이, 안용복이 오키에서는 ‘조선팔도지도’를 보여주고, 강원도 안에 죽도와 송도, 즉 울릉도와 자산(우산)도가 있음을 주장했다. 두 섬이 함께 조선의 영토라고 하고, 그 사실을 일본의 관리에게 기록하게 한 것은 중요하다”<sup>8)</sup>는 것이다.

5) 堀和生, 1987, p. 101. 호리는 “1987년 조선사연구회 논문집에 발표한 ‘1905년 일본의 독도영토 편입’이라는 논문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논거가 되고 있는 근세 초기 이래 일관된 일본영토 설과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따른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설을 역사적인 근거를 내세워 조목조목 논박했다.” 발표문에서 호리는 “조선 측 문헌에 지금의 다케시마(독도)가 등장하는 것은 일본 측보다 200년 정도 이르다”며 “(여러 사료를 볼 때) 15세기 초 조선인이 (동해에) 울릉도와는 다른 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 문헌이 조선의 정사(正史) 중 지리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독도에 대한 국가(조선)의 영유의식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일관된 일본영토 설’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 근거 역시 “안용복의 항의에 이은 조일(朝日) 양국 정부의 교섭 결과에 따라 1696년 막부(幕府)가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정식승인한 점과 함께 1877년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의 지령, 1894년·1899년판 일본 해군의 ‘조선수로지’ 등 일본 측 자료를 볼 때 일본 고유의 고유영토 설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세계일보(2005.3.15).

6)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년), 독도자료집 III(동북아역사재단, 2007). p. 6.

7) 시마네 소속 서북부의 도서(島嶼).

8) 內藤正中, 『竹島=獨島問題入門 日本外務省 竹島批判』(新幹社, 2008), p.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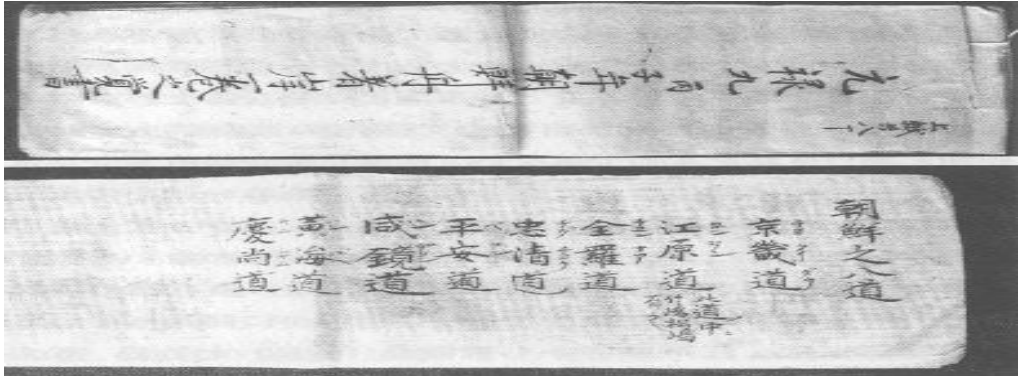


그림.1 江原道の中に「竹嶋 松嶋有之」と書かれている(村上家文書)<sup>9)</sup>

위의 기록이 설명해주듯이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屬島)”로 간주되었다.<sup>10)</sup>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200년 앞선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해 여러 문헌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문헌에는 江原道에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則可望見」이라고 쓰여져 있다.<sup>11)</sup> 즉 신라시대부터 알려져 있는 鬱陵島와는 별도로 하나의 섬이 있고 맑게 갠 바람 부는 날이면 서로 바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는 독도가 우산도로 돼 있다. 더 나아가 메이지정부가 1877년에 내린 ‘태정관(太政官)지령문서’에도 「울릉도(竹島)와 그 외 1개 섬(독도)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竹島外一島之義 本邦關係無之義ト 可相心得事)을 밝히고 있다. 이는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일본에서는, 죽도일건(竹島一件)’의 결론에 따라 1696년 일본이 울릉도의 1도(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할 결정이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최근문서로는 1978년 6월 5일 일본중의원 상공위원회에 참고인자격으로 출석해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증언한 후모토 다다시(麓多禎)에 의하면, “실은 도쿠카와 쓰나요시(德川綱吉, 1680~1709)시대에는 쇄국정책을 강화했지만 나중에 일단 포기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죽도(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의 메이지정부역시 이런 도쿠카와 시대의 생각을 계승했습니다.”<sup>12)</sup>를 보더라도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독도가 전략적으로

9) 1693년에 이어 1696년 제차 일본을 방문(일본어부들에 의한 납치)한 안용복이 휴대했던 문서에서 보듯이 오키에서 「조선팔도지도」를 보여주고, 강원도 안에 죽도와 송도, 즉 울릉도와 자산(우산)도가 있음을 주장했다.

10) 그림 1, ‘朝鮮之八道 江原道 참조.

11) 世宗實錄地理志(1454).

12)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2부』(2008) p. 493.

중요함을 인지하고 내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 강제편입하게 된다.

### III. 무주지선점과 허구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이 섬을 각각 ‘독도(獨島)’와 ‘다케시마(竹島)’라 부른다. 그러나 이 이름들이 정착되기 전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독도를 부르는데 사용되었다. 독도는 예로부터 한국에서,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 석도(石島)로 불리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 중에서도 우산도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고, 20세기 초가 되면서 석도와 독도가 쓰이기 시작했다. 석도와 독도는 ‘독섬’의 한문표기이며, 독섬은 울릉도 방언으로 바위섬을 의미한다. 즉, ‘독섬’이 그 의미(뜻)에 따라 한문으로 옮겨졌을 때, ‘석도(石島)’라고 표기되는 것이며, 발음에 따라 한문으로 옮겨졌을 때, ‘독도’라고 표기되었다. 일본은 17세기 이후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부르다가, 19세기말 이후에는 리양꼬도(リヤンコ島), 랑코도(ランコ島), 다케시마(竹島) 등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일본이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불러오다, 20세기 초부터 갑자기 독도를 다케시마로 변경하여 부르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은주시청합기’에 독도와 울릉도는 각각 마쓰시마(송도)와 다케시마(죽도)로 표기되어 있다. 그때부터 독도를 지칭하는 일본식이름은 마쓰시마 이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경부터 일본에서는 독도를 리양꼬(또는 랑코)라는 이름도 쓰였는데, 이는 서양세계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1849년)한 프랑스 고래잡이선 리양쿠르호의 일본식 표기이다. 당시 독도를 목격한 프랑스인들은 배의 이름(Liancourt)을 붙여서 독도를 ‘리양쿠르 암(Liancourt Rocks)’이라 명명했다. 그 후 리양쿠르 암은 서양인들이 독도를 부를 때 널리 사용하는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1905년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고 있다. 이는 ‘대나무 섬’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본이 그동안 200여년간 가까이 사용하던 마쓰시마를 1905년을 전후해서 다케시마로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물론 일본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19세말 조선수로지에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표기되어 있었기에 새로운 섬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게 되었다고 얘기한다.<sup>13)</sup> 더 나아가 지금까지 일본이 불러오던 독도에 대한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일본 측 자료는 바위투성이 섬 독도가 왜 대나무 섬으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13) 조선수로지 제2판(1899) p. 263.

시마네현의 섬 ‘다케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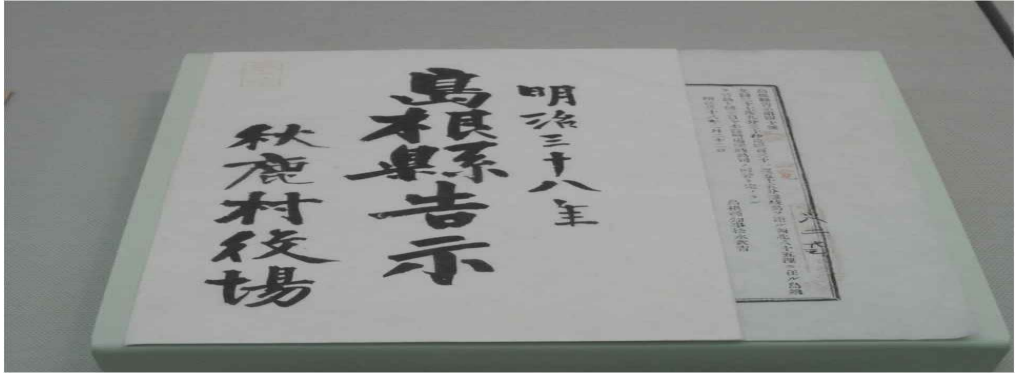


그림.2 시마네현고시 41호<sup>15)</sup>

하지만 110여 년 전 일본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을 대비해서였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러시아 군함의 동해 항해를 감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도가 장차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국 영토 편입을 선언하게 된다. 고시에서 독도의 명칭을 이전의 이름이었던 송도(松島, 마츠시마)에서 지금의 이름인 죽도(竹島, 다케시마)로 개칭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sup>16)</sup> 그러면서 일본은 독도침탈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자주 하는 질문 중에는, “첫째,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면, 왜 칙령41호(1900년)에서 ‘독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와 둘째, 나아가 ‘독도’라는 이름은 언제부

14) 堀和生 (1987). 호리는 1987년, 조선사연구회 논문집에 발표한 ‘1905년 일본의 독도영토 편입’이라는 논문에서 1905년 시마네현 고시이전에도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는 1904년 초 독도에서 어업권 독점을 추진한 나카이 요자부로(中正養三郎)역시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믿고 일본 정부를 통해 조선 정부에 독도임대를 청원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가 나서 이를 무주지(無主地)의 영토편입 청원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후 1906년 시마네현의 고시가 조선에 알려진 뒤 나온 울릉군수의 보고서, 박계순 참정대신의 상황보고 지시문,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보도 등을 종합할 때 조선 중앙정부도 처음부터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일반 민중도 주권 침해·침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주물선점설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도 편입은 일본인의 울릉도 진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미 울릉도를 지배한 일본은 군용전신선을 끌어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금어장 독점을 노렸던 시마네 어민 등 일본 민간과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일본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조선 전토(全土)에 대한 점령에 앞서 전주곡의 형태로 독도편입이 서둘러졌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05.3.15).

15) 각주 4번 참조.

16) 이에 대해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은 “죽도의 연혁을 고증한 결과 松島가 竹島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水路誌』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수로지』와 해도에 이미 울릉도를 송도라고 명명한 이상, 죽도에 해당되는 섬은 리안고 섬 이외에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죽도라고 명명하게 된 것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쓰고 있다. 오쿠하라 헤키운 「독도와 울릉도」 번역 및 해제(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009) p. 108.

터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만일 이 의문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 칙령의 공포를 전후해 조선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 됩니다”<sup>17)</sup>이다. 그러나 한국이 ‘독도’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본이 독도강제편입시기인 1905년 2월 22일 보다는 수개월이전인 1905년 9월 25일 일본군함 신고호(新高號)의 행동일지(軍艦新高号行動日誌)를 통해 일본의 다케시마보다 독도가 먼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3 『軍艦新高号行動日誌』 1904年 9月 25日, 日本防衛廳戰史部所藏<sup>18)</sup>

또한 1905년 독도편입 결정, 시마네현 고시 유효성에 대해 일본은 당시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어업관련 기록을 근거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 내용으로 일괄하고 있다. “오늘날의 다케시마에서 강치포획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1900년대 초기였습니다. 그러나 곧 강치어업이 가열 경쟁상태가 되자 시마네현 오키사람 나카이는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04년(메이지37년)9월 내무, 외무, 농상무의 3대신에 게 ‘리양코섬’의 영토 편입 및 10년간의 임대를 청원했습니다.”<sup>19)</sup>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2012년 12월 타계)는 생전에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는 당시 외무성의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郎) 정무국장, 농상무성의 마키 보쿠신(牧朴眞) 농수산국장, 해군성의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 수로부장 등 3명이 중심 역할을 했다면서 당시 이들은 모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나이토 교수에 따르면 이들 3명은 1904년 독도에서 강치 잡이를 하기 위해 한

17) 日本外務省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

18) 상기 그림에서는 ‘마츠시마(송도) 즉 리양쿠르트 이와(岩 바위)를 한국인들은 독도라고 쓴(부른)다’로 기록되어있다. 이 자료가 비록 일본 문헌이라 할지라도 한국은 독도라는 명칭을 시마네현고시40호 시행 이전부터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 日本外務省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

국 측에 ‘대하원(貸下願, 독도이용청원)’을 하려던 나카이의 신청을 독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으로 바꿔 일본정부에 접수토록 하는 등 독도 영토편입을 유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나카이의 이 같은 신청서를 앞세워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했다.”<sup>20)</sup>면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독도무주지편입을 부정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동 고시를 독도‘무주지 선점론(無主地 先占論)’에 바탕을 둔 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주장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고유영토설’이 등장하면서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1953년 7월 13일자와 1954년 2월 10일자의 두 번에 걸쳐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보내온 구상서(정부문서)에 독도는 고대로부터 일본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며 기존의 ‘무주지 선점론’에 ‘고유영토설’을 혼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논리를 억지로 결합 시켜 놓고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IV 국제법적 주장과 한계

일본이 독도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중 하나는 현재 일본외무성 독도관련 홈페이지 10포인트에 올라와있는 여섯 번 째 의“일본 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의사를 재확인 했습니다”이다.<sup>21)</sup> 그러면서 일본은 시마네현고시 40호보다 4년 이상 먼저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고시한 대한제국칙령 41호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이 부르고 있는 ‘독도’를 왜 ‘석도’라는 이름으로 고시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 ‘독도’ 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또 한국이 다케시마의 옛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나아가 ‘독도’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sup>22)</sup>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이 독도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 오고 있다.<sup>23)</sup> 한편 독도명칭이 처음 우리나라 공식 문서에 등장한 것은 1906년 3월 28일 일본 시마네현 진자이 요시타로

20) 연합뉴스(2006.10.27).

21) 본 문구는 올해 들어 검색 할 수 없으나 저자가 이전에 검색해 놓은 자료를 통해 본 논문에 언급하고 있음을 일러둠. (<http://www.mofa.go.jp/mofaj/>).

22) (<http://www.mofa.go.jp/mofaj/>).

23)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위한 10 포인트” 6-57번 참조. 日本外務省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

(神西由太郎)일행이 독도와 울릉도를 시찰하고 간 뒤 이들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심홍택 울도 군수가 강원도 관찰사대리 이명래에게 보고한 문서에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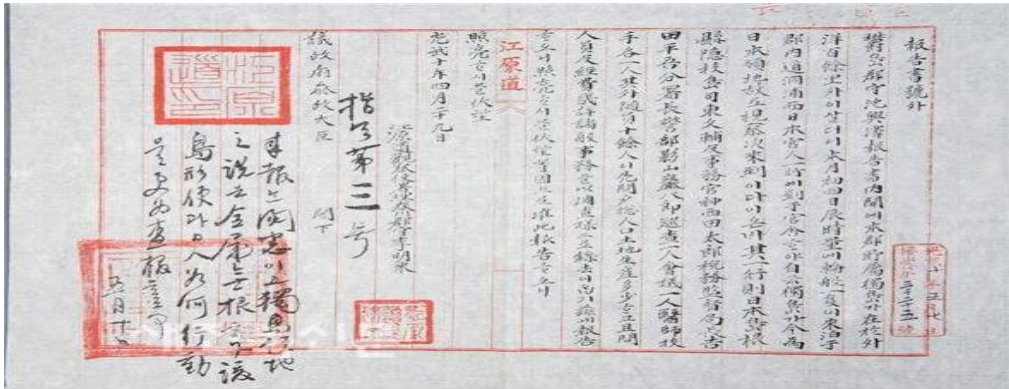


그림.4 이명래가 심홍택의 보고서를 전재(轉載)하여 참정대신 박재순에게 보낸 보고서.<sup>24)</sup>

“보고서 호외

울도군수 심홍택 보고서, 듣기로는 본 군 소속 독도가 외양(外洋) 백여 리 밖에 있는데, 이달 초 4일 9시경에 윤선(輪船) 1척이 군내 도동포에 와서 정박하였고, 일본 관원 일행이 관사에 왔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가 되었기에 시찰차 나온 것이다 하는 바, 그 일행은 일본 시마네현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東文輔)와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세무감독국장 요시다 헤고(吉田平吾), (경찰)분서장 가게야마 이와하치로(影山巖八郎)와 순사 1명, (의회)의원 1명, 의사, 기술자 각 1명, 그 외 수행인원 10여 명이고, 먼저 가구, 인구, 토지와 생산의 많고 적음을 물어보고, 다음으로 인원과 경비 등 제반 사무를 조사하여 갔으므로,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주시기를 앞드려 바라며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주시기를 앞드려 바랍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강원도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

“報告書號外

鬱島郡守沈興澤報告書內開에 본郡所屬獨島가在於本部外洋百餘里外이살더니本月初四日辰時量에輪船一雙이來泊于郡內道洞浦而日本官人一行이到于官舍하여自云獨島가今爲日本領地故로視察次來到이다이온바其一行則日本島根縣隱岐島司東文輔及事務官神西田太郎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分署長警部影山巖八郎巡查一人會議一人醫師技手各一人其外隨員十餘人이先問戶摠人口土地生産多少하고且問人員及經費幾許諸般事務를以調査樣으로錄去압기茲에報告하오니熙亮하시

24) 이 문서는 울도 군수 심홍택 이 보고서에서 ‘본군소속 독도가’라고 하여 독도가 자신의 통치 지역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를伏望等因으로准此報告하오니照亮하시물伏望 光武十年四月二十九日指令第三号 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李明來 議政府參政大臣閣下來報는閱悉이고獨島領地之說은全屬無根하나該島形便과日人如何行動을更爲查報할사光武10年(1906), 4月 29日 江原道觀察使 署理 春川郡守 李明來”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공식 표기한 기록이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이기에 한국 정부의 독도기록보다는 1년 정도 빠르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일본이 독도를 일본식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러일전쟁중 지금의 독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時局’의 논리를 내세워 다급한 나머지 울릉도의 일본식 이름을 붙여 ‘다케시마’라 부르게 되었다. 이때 일본은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해 러시아해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무인도였던 독도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은밀히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게 된다.<sup>25)</sup>

더 나아가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40호 이전에는 독도를 마쓰시마로 불렀던 기록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메이지(明治)3년인 1870년 일본 정부는 세 명의 외무성관리를 한국(당시 조선)에 파견해 독도가 어느 나라영토인지를 조사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귀국보고서에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힌다. 이 문서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인데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속도(屬島, 인접섬)’라고 써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문서로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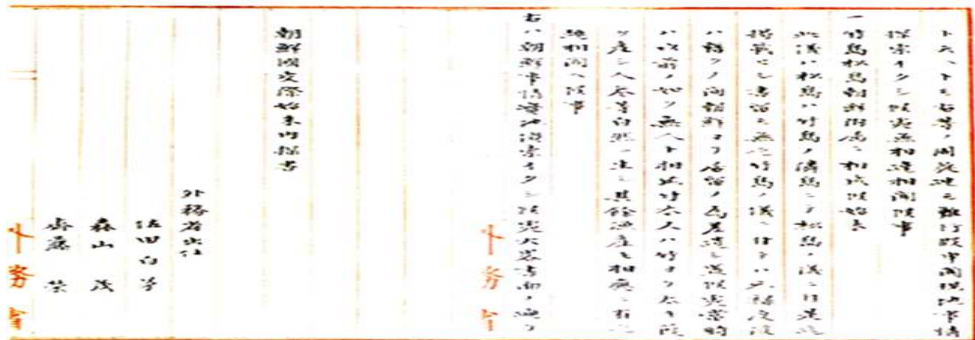


그림.5 1870(明治3年),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sup>26)</sup>

25) 內藤正中·朴炳涉 『竹島=獨島論爭 歴史資料から考える』(新幹社 2007). pp. 195~196.

26) 위의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죽도·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竹島松島朝鮮付屬に相成候始末)」라는 항목 속에서 「송도는 죽도의 옆에 있는 섬이고, 송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자료는 특별히 없다. 그리고 죽도에 대해서는 겐로쿠(元祿) 5년간 이후, 잠시 동안은 조선에 의해 거류민을 파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어 있다...」고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무주지 선점논리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이다.

둘째, 1877년 발행된 ‘태정관(太政官)’문서인데 「울릉도(당시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 松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 (竹島外一島之義 本邦關係無之義ト 可相心得事)」을 밝히고 있다. 이는 1696년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일본에서는, 죽도일건(竹島一件)’의 결론에 따른 결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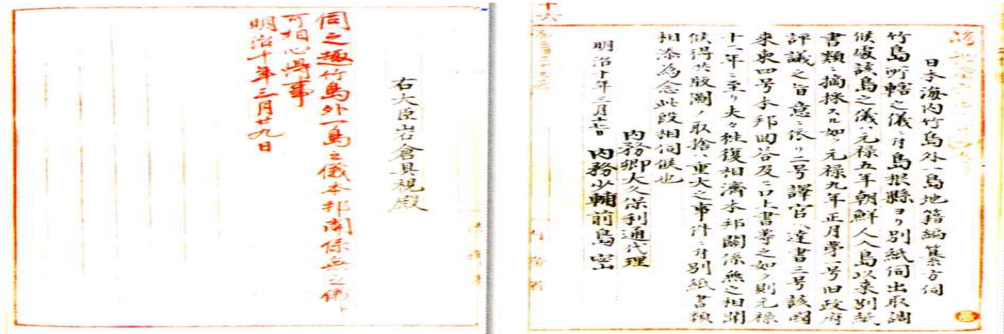


그림.6 일본 태정관 지령문(1877년).27)

태정관은 일본내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사법·입법·행정을 관장하는 국가 기관이었다. 그래서 이후 일본정부에서 제작하는 모든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성립되게 된다. 이후 일본에서 그려지는 모든 지도는 여러 가지방법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본토와는 색깔을 달리 하거나 일본의 서북경계를 오키섬으로 제한하게 된다.<sup>28)</sup> 그리고 일본은 매달 간행되는 수로관련 잡지에서조차 조선수로지와 일본수로지를 구별하여 간행하였는데 이 수로지는 1899년에 일본 수로부에서 간행하였다. 제4편 '조선동안'에서 독도를 리앙코 열암(Liancourt rocks)이라고 표기하고 그 외에도 영국 배나 러시아 배가 이 섬을 발견하고 각각의 이름을 붙였음을 소개하며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27)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일본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금지조치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내무성에 지시하였다.

28) 오노 에이노스케(小野英之助), 「大日本國地圖, 1892」. 이 지도는 보통학전서 제16편 만국신지도에 수록된 일본전도이다.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그림.7 위의 그림은 1899년 일본수로부에서 발행한 조선 수로지.<sup>29)</sup>

앞서 언급했던 1877년의 태정관문서에서도 증명되었듯이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은 일본정부(도쿠가와 막부와 메이지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던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에서 알 수 있는데, 당시 중의원 상공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센카쿠도와 독도에 대해 발언한 후모토 다다시(麓多禎)의 견해에 따르면, “...생략, 굳이 한마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일본은 메이지(明治) 이래, 이른바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과정에서 죽도[독도]도 센가쿠 열도(尖閣諸島)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사적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적어도 국가 백년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그리 쉽게 영유권은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죽도[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근거가 있지만 다만 일본이 영유했을 당시에는 이미 조선의 국왕은 일본에 속박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sup>30)</sup> 이 내용은 당시 일본 의회에서는 지금 한·일 또는 중·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영토 문제들이 일본의 제국주의의 유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이었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에 대해 후모토는, “...생략, 실은 장군 도쿠가와 츠나요시(德川綱吉)<sup>31)</sup> 시대에는 쇄국 정책을 강화했지만 나중에 일단 포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죽도[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의 메이지정부 역시 이런 도쿠가와 시대의 생각을 계승했습니다...생략.”<sup>32)</sup> 그래서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편입하고 독도에 대해 무주지선점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당시 독도는 주인이 있는 무인도였기 때문이다. 특히 시마네현 고시 5년 전인 1900년

29) 이 수로지는 조선 연안과 그 부속도서를 일괄해서 편찬했다. 그리고 제4권 조선동안(朝鮮東岸)에서 독도를 ‘리앙쿠르트 열암’으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여 일본해군에서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30)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2부』(2008) p. 493.

31) 江戸幕府五代將軍, 본문 서론 참조.

32)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2부』(2008) p. 493.

10월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았다. 대한제국은 황실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군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도(대섬, 울릉도 연안의 소도), 석도(독도)까지 관할토록 정하면서 울릉도의 행정단위를 군으로 승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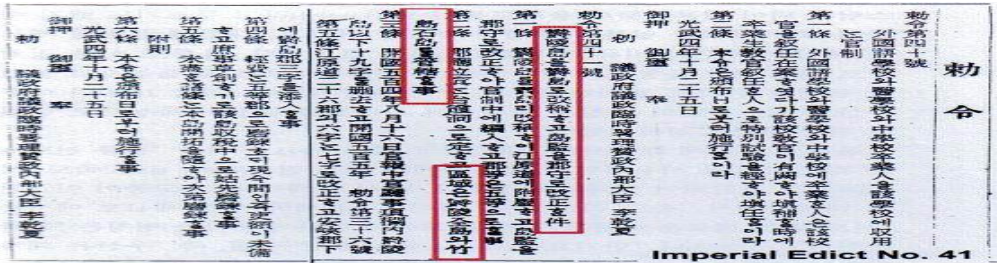


그림.8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반포된 칙령41호.<sup>33)</sup>

이 조치는 조선정부가 서울주재 일본 공사에게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직후에 취해졌으며, 동 칙령의 내용은 관보에도 게재된 만큼,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둘째,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섬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국정부에 독도 영토편입 의사를 알리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학자는 이러한 편입이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이들의 주요한 논리는 당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면 왜 타국(일본)으로 편입에 대해 항의 하지 않았느냐이다.<sup>34)</sup>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왜냐면 일본이 독도편입에 즈음하여 한반도주변정세는 이하 사건들로 인해 일본에 항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 ‘1904년 2월 6일 러일전쟁 발발,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체결,<sup>35)</sup> 같은 해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체결,<sup>36)</sup> 1905년 4월 8일‘한국보호권확

33) 이 칙령에 의거하여 울릉도는 독립된 군(郡)으로 격상되어 울릉도·죽도·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울릉도 도감(島監)은 울릉군 군수(郡守)로 격상되었으며, 울도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裴季周)가 임명되었다.

34) 나카노테츠야(2012) 第2期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會.

35) 이는 일본에 의한 한국방위무무를 규정하는 한편,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의로 수용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 인지시키는 조약이었다.

36)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자를 한국 정부가 제정·외교고문에 임명하고 그 후 외교안건은 일본과의 협의를 요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시에 일본은 같은 해 11월 해군사령부 군함 쓰시마(對馬)호에게 죽도가 전신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시찰하라고 명령하였다. 다시 말해 울릉도와 해저전신선으로 연락할 망루건설의 가부를 조사한 것이다. 쓰시마호 함장은 지형적으로 관란하지만 동도라면 건축물 구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립의 건<sup>37)</sup>을 각의 결정하고 7월에는 가즈라·테프트 협약을 체결, 8월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체결, 그리고 9월 미국주선으로 포츠머스조약 체결,<sup>38)</sup> 11월 17일 보호조약인 제2차 일한협약(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일본은 한국외교를 ‘감시지휘’하게 되었다.”<sup>39)</sup> 이는 앞에서 언급한 후모토의 견해와 동일하다. “...생략, 당시에는 이미 조선의 국왕은 일본에 속박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sup>40)</sup>에서 보듯이 일본에 의한 독도편입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 V. 결론

한편 1905년 독도는 결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 자체도 영토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의 유효한 법률적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증거들이 있다. 이는 일본외무성이 2008년 2월부터 독도관련 홈페이지에 독도가 무주지 이었다는 주장내용을 볼 것 같으면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에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면 왜 칙령에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라 하면서 지금까지도 독도문헌이 발견되면 한국영토로 인정할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당시 대한제국은 칙령41호를 통해, 울릉군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도(대섬, 울릉도 연안의 소도), 석도(독도)까지 관할토록 정하면서 울릉도의 행정단위를 군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당시 독도는 무인도이었을지는 몰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는 아니었다. 왜냐면 이는 조선이 오래전부터 취해오던 수토정책(搜討政策)의 일환으로 섬을 비워두며 관리하였을 뿐 일본식으로 해석한 공도정책(空島政策)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섬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사실을 대한제국에 알리지 않았으며 동경에 있는 외국공관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1876년에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 The Bonin Islands)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 이전 동경에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공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일본에 의한 독도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은 허구에

37) 이때 일본 정부는 ‘원래 한국의 외정은 동양의 화근이 잠재적인 곳이어서 장차 분규제발 발단을 끊고 제국의 자위를 보전시키기 위해서 제국은 반드시 지금 이 때에 한발 나아가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하고 한국의 대외관계를 우리 손으로 장악해야 한다’고 하는 각의 결정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먼저 열강으로부터의 양해를 얻으려고 하였다.

38) 이 조약의 2조에는 ‘러시아 제국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 대해 행정, 군사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일본제국이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시 조치를 집행하는 한편 이것을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였다.

39) 박진오 『일본문화학보』 제54편(2012.8) 한국일본문화학회, p. 207. 재인용.

40)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2부』(2008) p. 493.

불과하다. 그래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한국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이다. 더 나아가서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로 인한 국내문제를 민감한 영토주권문제로 비화시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본의 대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기소모적 논쟁으로 보여 질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학준 「독도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 김명기·이동원 「일본외무성 다케시마문제의 개요비판」 (책과 사람들, 2010).
- 김병렬 「The History of Imperial Japan's Seizure of Dokdo」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8).
- 최장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조작의 계보 -독도영토 부정과 '죽도'신영토론 조작」 (제이앤씨, 2011).
- \_\_\_\_\_ 「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미국과 일본의 영토팽창론을 경계하다 -」 (제이앤씨, 2014).
- 慎鋪厦 編著 「獨島領有權資料의 探究」 제3권(독도연구보존협회, 2000).
- 內藤正中, 『竹島=獨島問題入門 日本外務省 竹島批判』 (新幹社, 2008).
- 內藤正中 · 朴炳涉 『竹島=獨島論爭 歷史資料から考える』 (新幹社 2007).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2부』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엮음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경인문화사, 2009).
- 광진오 『일본문화학보』 제54편(2012.8) 한국일본문화학회.
- 나카노데츠야(2012) 第2期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會.
- 世宗實錄地理志(1454).
-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년), 독도자료집 III(동북아역사재단, 2007). 연합뉴스(2006.10.27).
- 日本外務省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

要 旨

---

Title: The Flaws and Limits of Japan's Claims over Dokdo ; In Terms of Indigenous Territory Theory, Terra Nullius Theory, and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analyzes Japan's claim over Dokdo in three terms; first, indigenous territory argument, second, terra nullius argument, and third, international law argument. First, the indigenous territory argument claims that Japan recognized Dokdo earlier than Korea. An example is that Japanese fishers fished in Dokdo since the 17th century, and thus they occupied Dokdo. Second, according to the terra nullius theory, Japan first claimed the terra nullius and intimated it as Japanese territory on Shimane Prefecture's gazette, Feb.22, 1905. Third,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the Japanese government criticizes Korea for illegally occupying Japanese territory, which is legally Japanese based on the first two arguments. Regarding each of these three arguments, this paper points out the flaws and limits.

Key Words : Indigenous Territory Theory, Terra Nullius Theory,  
International Law

투 고 : 2014. 5. 31  
1차 심사 : 2014. 6. 14  
2차 심사 : 2014. 7. 5